

의안번호	2215713
의 퇴 인	박주민의원
회 답 일	2026. 1. 21.
추 계 번호	25C7319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2(중앙상담지원기관의 지정 등)	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1. 지역상담기관의 지원 및 그 종사자 교육 2. 임신·출산·임신의 유지 및 종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3. 임신·출산·임신의 유지 및 종결 등의 지원을 위한 정책 분석 4. 그 밖에 임신·출산·임신의 유지 및 종결 등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	재량규정
2	안 제7조의3(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) 및 안 제7조의4(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등)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를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이 조에서 “보건복지부장관등”이라 한다)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2항)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(안 제7조의4) 1. 임신·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,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2. 임신의 유지·종결에 대한 상담(온라인 상담을 포함한다) 3. 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4. 그 밖에 임신·출산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	재량규정
3	안 제7조의6(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의 구축·운영)	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상담기록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상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의2(중앙상담지원기관의 지정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조의3(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) 및 안 제7조의4(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등)	
3	안 제7조의6(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의 구축·운영)	

2. 상세 사유

가.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경비 보조(안 제7조의2 및 안 제21조¹⁾)

□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신·출산·임신의 유지 및 종결 관련 기관 간 연계구축과 관련 정책 분석 등을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하고, 이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구체적인 사업 규모, 사업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현시점에서는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- 참고로, 보건복지부는 임신·출산·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및 상담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²⁾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, 인구보건복지협회³⁾에서 운영하는 러브플랜⁴⁾이라는 별도의 서비스도 마련

1) **안 제21조(경비의 보조)**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4.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자의 중앙상담지원기관 운영 경비

5.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소 및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역상담기관 운영경비

2) www.childcare.go.kr

3) 「모자보건법」 제16조(협회)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되어 있는데, 온라인, 전화(Tel 1644-7373) 및 SNS를 통해 의료(건강), 사회복지(정책), 정서지원(심리)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- 또한, 보건복지부는 예산사업으로 실시 중인 “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” 사업 중 내역사업인 “보호출산 정책 수행 경비” 사업(2025년 예산 3억 6,400만원)을 통하여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홍보, 보호출산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연구,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음

나.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(안 제7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를 지역상담기관으로(안 제7조의3 제1항),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을 지역상담기관으로(안 제7조의3제2항) 각각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임신·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사업 및 그에 따른 지원 수준을 가정하여 합리적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「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⁵⁾는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상담기관을 지정하고,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가 보건소 등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4) <https://www.loveplan.kr/home/59.htm>

5) 「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(상담기관의 지정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<중략>

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보건소,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상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이 지정·운영되고 있으며,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·출산 지원기관 및 종합상담기관의 업무를 해당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 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“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”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예산(2025년 기준 26억 1,700만원)을 편성하고 있으며, 중앙 및 지역상담지원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임신·출산·양육 지원 제도 안내 및 보호출산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, 보호출산 신생아의 보호조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
다. 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- 개정안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, 현시점에서 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
-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@na.go.kr